내 용 증 명

대여금 반환 청구

■ 발신인 (보내는 사람)

성 명	
주 소	
연 락 처	

■ 수신인 (받는 사람)

성명 · 상호	
주 소	

제 목	대여금 반환 청구의 건

■ 대여 내용

대 여 일	20 년 월 일 □ 계좌이체 □ 현금 □ 기타 ()
대여 금액	금 원정 (₩)
약정 변제일	20 년 월 일 □ 정하지 않음
약정 이자	연 % □ 무이자
받은 금액	금 원 (20 . . . 까지)
남은 금액	금 원

■ 내용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위와 같이 귀하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정한 변제일이 지나도록 남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3. 이에 아래 기한까지 남은 금액(약정 이자가 있으면 이자 포함)을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급 기한	20 년 월 일까지
입금 계좌	은행 (예금주)

4.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부득이 지급명령 신청 ·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그에 따른 비용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겠습니다.

첨 부	1. 차용증 사본 (있으면) 2. 계좌이체 내역 · 문자 · 메신저 대화 사본

20 년 월 일

발 신 인	성명 (인)	서명 · 날인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 같은 문서를 3 통(원본 1 · 등본 2) 만듭니다. 원본은 수신인에게 가고, 우체국은 등본 1 통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 년간 보관합니다. 그동안 발신인 · 수신인 모두 재증명 ·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 48 조 · 제 54 조 · 제 55 조).

· 내용증명은 「이런 내용을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할 뿐, 그 자체로 상대에게 돈을 내게 하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 돈을 달라는 내용증명(최고)을 보낸 뒤 6 개월 안에 지급명령 · 소송 ·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도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민법 제 174 조).

· 사실과 다른 내용 · 욕설 · 위협하는 문구는 넣지 마세요. 날짜 · 금액 · 계좌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 적습니다.

· 보낸 뒤 받은 「내용증명 우편물」과 등기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